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52
----------	-------

발의연월일 : 2026. 4. 7.

발 의 자 : 이광희 · 박지원 · 김 윤
김문수 · 임미애 · 이주희
박성준 · 허성무 · 김우영
박정현 · 민병덕 · 허종식
채현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수국적자가 18세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면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선택기간을 놓치면 병역을 마친 후에야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던 기존 국적 관련 제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2020년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 결정)을 선고한바 있고, 이에 현행법 제14조의2에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후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그 위헌성을 제거한 바 있음.

그런데 출생시 또는 어릴 때부터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었던 복수국적자들로서 병역의무자가 아닌 사람들의 경우 국민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혜택만을 향유하는 소위 ‘체리피킹’이나 국적이탈을 통한 병역회피의 가능성도 없는 것임에도 다른 경우와 동일

하계 22세가 되기 전까지라는 비교적 짧은 국적 선택기간이 주어지고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국적선택의무 및 선택기간과 관련하여 마땅히 국가가 복수국적자인 국민들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음에도 관련규정이 없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어온 병역의무자가 아닌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선택기간을 연장하고, 국가가 복수국적자들에게 국적선택의무의 존재, 국적선택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노력하게 하여, 복수국적자인 국민들의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2조).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만 20세가 되기”를 “20세가 되기”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를 “22세가 되기 전까지(제14조의2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25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 20세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적선택의무를 가지는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국적선택의무의 존재
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국적선택의 요건 및 절차
3.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지는 복수국적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u>만 65세</u>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p> <p>5. (생략)</p> <p>③ (생략)</p> <p>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u>만 20세가 되기</u>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u>만 22세가 되기 전까지</u>, <u>만 20세가 된</u>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p>	<p>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65세</u>----- ----- -----</p> <p>5.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u>20세가 되기</u>----- -----<u>22세가 되기</u> <u>전까지</u>(제14조의2제1항제1호가 <u>목 또는 같은 호</u> <u>나목에</u> <u>해당</u></p>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② · ③ (생략)

<신설>

하는 자의 경우 25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 20세가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적선택의무를 가지는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국적선택의무의 존재

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국적선택의 요건 및 절차

3.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지는 복수국적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의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